

인천지방법원 2023. 1. 12 선고 2021가단272987(본소), 2021가단272994(반소) 판결
[공사대금 · 하자보수청구]

재판경과

인천지방법원 2024. 4. 26 선고 2023나53358(본소), 2023나53365(반소) 판결

인천지방법원 2023. 1. 12 선고 2021가단272987 판결

전문

원고(반소피고) 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현

담당변호사 김민기, 박정은

피고(반소원고) B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해

담당변호사 신재균

변론종결 2022. 11. 17.

판결선고 2023. 1. 12.

주문

1. 원고(반소피고)는 피고(반소원고)에게 22,55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1. 11. 4.부터 다 갚는

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.

3. 소송비용은 본소, 반소를 합하여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본소: 피고(반소원고, 이하 ‘피고’라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‘원고’라 한다)에게 2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. 7. 1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반소: 주문 제1항 기재와 같다.

이 유

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.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10. 19. 피고로부터 경기도 고양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 신축공사(이하 ‘이 사건 공사’라 한다)를 공사대금 1,017,500,000원(부가세 포함), 공사기간 2018. 10. 22.부터 2019. 3. 30.까지로 정하여 수급하였다. 나. 원고는 2019. 5.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1,060,000,000원을 지급받았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, 3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당사자들의 주장

가. 원고의 주장

이 사건 공사대금은 당초 1,017,500,000원이었으나 이후 피고와 합의한 추가공사비를 합한 총공사대금은 1,085,000,000원이다. 피고는 이 중 1,060,000,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미지급 공사대금 25,000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나. 피고의 주장

피고는 원고와 추가공사비 67,500,000원에 관한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, 오히려 약정 공사대금에서 42,500,000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. 가사 추가공사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해 지급한 ① 공장, 사무실의 전기분리 공사비 2,455,500원, ② 불완전 전기공사부분 재공사비 3,000,000원, ③ 전기 소방공사비 700,000원, ④ 에어컨 전기설비비 2,000,000원, ⑤ 옆집 대지 통행 사용료 3,000,000원 합계 11,155,500원의 구상금 채권으로 원고의 추가공사비 채권과 상계한다. 또한,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피고에게 하자보수비 22,550,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반소로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.

3. 판단

가.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

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, 다만 수급인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하였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을 뿐이다(대법원 2006. 4. 27. 선고 2005다63870 판결 참조). 이 경우 수급인의 추가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의 시행 및 추가공사대금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.

나아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, 공사도급계약의 목적,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,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,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,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[대법원 2012. 9. 13. 선고 2010다70223(본소), 2010다70230(반소) 판결 등 참조].

이러한 법리에 따라 보건대, 갑 제3호증(세금계산서) 등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와 합의하에 이 사건 공사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아니한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로 67,500,000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.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.

나.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

살피건대,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, 이 사건 건물에는 ① 외벽 화강암 미시공, ② 누수(옥상, 지하 출입구, 3층), ③ 2, 3층 화장실 타일 박리, ④ 현관 바닥 패임, ⑤ 지하계단 타일 박리 등의 하자가 있고, 이러한 하자를 보수하는데 총 22,550,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의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으로 22,55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21. 11. 4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%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,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고은설